

의안번호	2212672
의 퇴 인	박정하의원
회 답 일	2025.9.18.
추계번호	25D4731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9조의16 (개인정보피해보상 기금의 설치 등)	정부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을 설치함(제1항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(제2항) 1. 정부출연금 2.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수납액 3.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 4. 기금의 운용수익금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정부는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의 직전 회계연도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(제3항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함(제4항) 1.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.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의무규정
2	안 제39조의17 (구상권)	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3	안 제39조의18 (기금의 관리·운용)	기금은 보호위원회가 관리·운용함(제1항) 보호위원회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국가재정법」 제74조에 따라 보호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 심의회를 둠(제4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
4	안 제39조의21 (차입금)	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고(제1항),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(제2항),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함(제3항)	재량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9조의16(개인정보피해보상 기금의 설치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9조의17(구상권)	
3	안 제39조의18(기금의 관리·운용)	
4	안 제39조의21(차입금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을 설치하여,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
 - 안 제39조의16제2항¹⁾에 따르면, 기금은 현행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²⁾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,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
 -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안 제39조의16제4항³⁾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

-
- 1) 제39조의16(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등)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 정부출연금
 2. 제3항에 따른 과징금 수납액
 3. 구상권 행사에 따른 변제금
 4. 기금의 운용수익금
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- ③ 정부는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과징금의 직전 회계연도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2) 제64조의2(과징금의 부과)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9.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된 경우. 다만,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·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3) 제39조의16(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의 설치 등)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1.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정보

· 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함

-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르면, 개정안에 따라 기금의 재원이 되는 과징금(제64조의2제1항제9호)은 전액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는데, 그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과징금의 징수현황: 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부과액	징수액	미납액	비고
과징금 (제64조의2제1항제9호)	8,905	8,651	254	-

자료: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개정안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기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수입 외에도 정부출연금, 차입금,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,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의 시행 이후 발생할 정보주체의 손해와 정보주체에게 지급할 보상금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
-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“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”의 수입과 지출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곤란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- 참고로,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개인정보 유출 등의 건수는 다음과 같음

[표 2]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 건수: 2021~2025년

(단위: 건)

구분	2021	2022	2023	2024	2025.7.
건수	49,811,942	10,381,761	14,636,441	5,926,583	7,786,885

자료: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
- 주체에 대한 보상금 지급
 - 2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 - 3.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
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